



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

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?

화재·폭발·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.



가입대상 (20종)

- | | | |
|--|--|---|
| ☒ 1층 일반 · 휴게음식점 (100㎡ 이상) | ☒ 주유소 | ☒ 물류창고 |
| ☒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(임대아파트 및 연립·다세대주택 포함) | ☒ 여객자동차터미널 | ☒ 도서관 |
| ☒ 숙박업소 | ☒ 박물관 | ☒ 미술관 |
| ☒ 장례식장 | ☒ 경정장 | ☒ 장외매장 |
| ☒ 과학관 | ☒ 장외발매소 | ☒ 지하도상가 |
| ☒ 경륜장 | ☒ 전시시설 | |
| ☒ 경마장 | | |
| ☒ 국제회의시설 | | |

☒ 농어촌민박 (추가)

“농어촌민박”이란?

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행자에게 숙박,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소

※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(02-3702-8500)로 전화주세요.



보상범위

신체피해 :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
재산피해 : 10억원까지 보상

-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(원인불명 사고, 방화 등)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.
- 자연재난(지진 등)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신속한
구제

실질적인
구제

가입기한

농어촌민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

※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(~ 2021.6.9) 이전 가입 필요

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, 왜 꼭 가입기간 내 가입해야 하나요?
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
사례 1

서울 동작구 여관 화재 (2019년 2월)

사고내용 | 2층 소재 여관에서 버너 과열로 화재 발생

가입면적 | 보험료 |
89m² 20,000원

지급내역 | 투숙객 中 1명 사망, 1명 부상(화상)

대인 **178,300,000원**



아래층 업소 수침손, 투숙객 가재도구

대물 **11,278,600원**

사례 2

인천시 중구 펜션 화재 (2020년 2월)

사고내용 | 노후화된 환풍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

가입면적 | 보험료 |
606m² 92,000원

지급내역 |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한 투숙객 2명에 대한 피해

대인 **1,500,000원**



가입전화

※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(02-3702-8500)로 전화주세요.

메리츠화재 | 1566-7711

흥국화재 | 1688-1688

KB손해보험 | 1544-0114

NH농협손해보험 | 1644-9000

MG새마을금고 | 1599-9010

(사)한국농어촌민박협회 | 033-262-4422 (단체가입문의)

한화손해보험 | 1566-8000

삼성화재 | 1588-5114

DB손해보험 | 1588-0100

수협 | 1588-4119

MG손해보험 | 1588-5959

롯데손해보험 | 1588-334

현대해상 | 1588-5656

하나손해보험 | 1566-3000

신협 | 1544-3030



행정안전부